

대학원학칙시행내규

제정 1999. 3. 1

변경 2022. 5. 17

제28조 (논문지도교수 선임신청)

논문지도교수 선임은 제1차 학기 이내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2017.12.28.,2018.5.15.)

제29조 (논문지도교수 자격)

- 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교내외 전임교원중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조교수가 석사과정 논문지도를 담당할 경우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자, 박사과정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4.7.29., 2017.12.28., 2020.04.21)
- ② 논문지도교수의 학생지도수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매학기 5인, 박사학위과정은 매학기 3인, 특수대학원은 매학기 5인까지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변경 2004.7.29)

제30조 (논문지도교수 변경)

- ① 당초 지도교수를 선임하였으나 사망, 휴직, 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논문제출 대상자는 반드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논문계획발표 후 논문지도교수가 퇴직한 경우에는 논문지도의 연속성을 위하여 교수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퇴직후 2년 이내까지 논문지도를 연장할 수 있다. (변경 2001.6.27 2004.7.29., 2008.10.2., 2017.12.28.2018.5.15.)
- ② 학위논문심사결과 불합격된 자가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논문계획발표 및 본논문 심사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변경 2004.7.29)